

대구예술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규정

(개정 2010.08.02. 교무위원회)

(개정 2012.08.08. 법인이사회)

(개정 2019.06.20. 교무위원회/자구수정)

(개정 2019.11.28. 학교법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세기학원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6장 제1절 제3관에 의거하여, 우리 대학교 교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두는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7인 이내의 교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3조 (위원장 및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의 유고시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회의소집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에 관한 심의에는 출석할 수 없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즉시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학연, 지연, 종교 등의 이유로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위원에게는 회피대상자로 지정 할 수 있다.(개정 2019.11.28.)

제5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총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임면 제청하고자 할 때의 임면 동의에 관한 사항과 교원의 승진임용 제청에 관한 사항(개정 2010.8.2.)(개정 2019.11.28.)

2. 기타 총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관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9.11.28.)

1. 학교법인 세기학원 정관 제41조 제1호내지 제4호에 의한 휴직

2. 복직

3. 사망으로 인한 면직 및 정년퇴직

③ 위원회가 신규임용되는 교원 및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 활동

2. 교수 및 학생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제6조 (회의록작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제7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우리 대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8조 (협조의 요청) 위원회는 그 임무수행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부처 및 관련 교직원에게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시행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